

의안번호	2202287
의 퇴 인	정점식의원
회 답 일	2024. 10. 25.
추계번호	24D2326

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낚시어선업자에 도선사업 면허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억 900만원, 2030년 3억 3,2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6억 100만원(연평균 3억 2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낚시어선업자에 대한 도선사업 면허의 특례 (안 제3조의2 신설)	309	314	320	326	332	1,601	320

주: 1.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도선사업 면허의 특례(안 제3조의2 신설)는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하고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 2.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이 단절되거나 취약한 도서 등을 오가는 노선 등 적자노선의 손실보전을 위하여 2023년 기준 적자의 36.4%를 보조금으로 지급(제36조제1항)하고 있음. 개정안에 따라 낚시어선업자가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받게 되면 일부는 적자노선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대상이 증가하므로 추가재정소요 예상
 3. 본 추계에서는 낚시어선업자의 30%가 개정안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의 특례를 적용 받아 도선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이 중 0.7%가 적자노선이 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의2 (낚시어선업자에 대한 도선사업 면허의 특례) 신설	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에 따른 낚시어선업자로부터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면허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이동수단이 열악한 섬의 주민을 운송하도록 도선사업의 면허의 범위를 한정하여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. ※현행법 제36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 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,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,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조의2(낙시어선업자에 대한 도선사업 면허의 특례) 신설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관할관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이동수단이 열악한 섬의 주민을 운송하도록 낙시어선업자에게 도선사업의 면허의 범위를 한정하여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법 제36조제1항¹⁾에 따른 적자노선 손실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의 확대로 추가재정소요 예상
 - 행정안전부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노후선박 교체 등에는 보조금 지급 사례가 없음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²⁾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1) 제36조제1항(보조금의 지급 등)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 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,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,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2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4.10 기준)

	2022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5.1%	3.6%	2.5%	2.1%	2.0%	2.0%	2.0%	2.0%	2.0%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낚시어선업자의 30%가 도선사업 면허의 특례를 적용 받아 도선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적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율은 36.4%로 가정
 - 본 추계에서는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낚시어선 중 0.7%가 적자노선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가정
 - 2022년 기준 낚시어선은 총 4,364척이고 추계기간 동안 낚시어선은 매년 1.9%³⁾씩 감소하고 이중 30%가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받는 것으로 가정
 - 행정안전부에 따르면, 2023년 기준 유·도선사업 선박은 총 709척이고 적자노선 선박은 5척으로 적자노선 발생확률은 0.7%로 추정
 - 행정안전부에 따르면, 2023년 기준 적자노선 선박의 평균 적자는 9,900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율은 36.4%
 - 2023년 기준 적자노선 5척의 적자는 총 4억 9,600만원으로 선박당 평균 적자는 9,900만원
 -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액은 1억 8,000만원으로 보조율은 36.4%
 - 선박당 평균 적자는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값에 따라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결과, 낚시어선업자에 도선사업 면허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억 900만원, 2030년 3억 3,2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6억 1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척,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보조금 지급 대상 선박 수	4,042	3,965	3,890	3,816	3,743	-
낚시어선 수(a)						
(A=a×30%×0.7%)	8	8	8	8	8	-
선박당 평균 적자(B)	106	108	110	112	114	
추가재정소요(=A×B×36.4%)	309	314	320	326	332	1,60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3) 해양수산부에 따르면, 2022년 기준 낚시어선은 총 4,364척이고 최근 3년(2020~2022년) 평균 증가율은 -1.9%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낚시어선업자의 도선사업 참여 확률, 적자노선 발생 확률 등을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